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만 화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만화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만화산업 보호·육성 시책 강구를 위해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신설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 제19247호, 2023.3.21., 2023.9.22.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기존 법령에 규정된 ‘통계’ 작성 대상을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작성 대상에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제작환경 및 계약·거래관행’을 추가(안 제8조 제1항), 실태조사의 방법(제2항) 및 전문성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조항 추가(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통계 및 실태조사) ①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
 4.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거래환경 및 계약·거래관행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통계의 작성 대상)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통계 및 실태조사) ①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만화산업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1. 만화산업의 시장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2. 만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	3. 만화산업의 인력 현황
4.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4. 국내외 만화산업의 동향 및 전망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제작환경 및 계약·거래관행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 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63